

▶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제정: 2007년 8월 30일 이사회 의결

개정: 1차 2009.1.20, 2차 2015.3.27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산업응용수학회(이하 본 학회) 정관 제5조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관장한다.

1.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각종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차, 2차 개정)

1. Chief Editor는 정회원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2년 이상의 임기를 정하여 임명한다. Chief Editor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만일 Chief Editor가 복수인 경우 회장은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 책임편집위원 중 Associate Editor-In-Chief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Managing Editor는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책임편집위원 중 1인 또는 복수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3.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산업응용수학 분야의 저명 학자(국내 학자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조 (운영보고) 위원장은 이사회에 학술지 편집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예산과 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규정개정) 1. 위원장은 본 규정의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심사, 논문 발행 및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제정 및 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한국산업응용수학회지 발간규정

규정 제정: 2007년 8월 30일 이사회 의결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4조 3항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과 관련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산업응용수학회지의 논문 심사, 투고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문명칭) 한국산업응용수학회지(이하 본 논문집)의 영문 명칭과 그 약식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
2. 영문약식명칭: J. KSIAM

제3조 (투고논문) 본 논문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하는 논문은 수학의 이론 또는 공학, 경제학, 컴퓨터공학, 의학, 물리 등에 대한 수학의 응용이론, 계산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는 산업응용수학의 제 분야에서 독창적인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학술 잡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라야 한다.

제4조 (저작권)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응용수학회로 귀속되며 한국산업응용수학회는 게재된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매도,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논문심사)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심사위원)

-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이 논문의 해당분야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 (2)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단,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저자가 요구하면 심사위원의 성명을 밝힐 수도 있다.
- (3)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하며 편집이사의 중계로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심사기간)

- (1) 접수된 논문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본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 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3)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서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5.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친다.
 -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음을 알린다.
6. **(채택보류)**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 보류”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1) 저자의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 (2) 주요 연구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 (3)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 (4) 그 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7.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2) 논문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게재판정)** 심사위원 2명중 채택 가부의견이 상반됐을 경우에는 편집이사의 판단에 의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그 의견에 참고하여 편집이사가 가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6조 (논문투고) 논문의 투고는 다음에 정한 규칙에 따라 투고하여야 한다.

- 1. J. KSIAM에 투고하는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논문원고 집필요령(introductions to Authors)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3. 투고된 논문이 본 회지 발간 규정 및 논문원고 집필요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편집 및 발행) 본 논문집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다음을 정한다.

- 1. 본 논문집의 발행인은 회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이 한다.
- 2. 논문지의 발간은 년4회로 하고 각호 발간 시기는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및 12월 25일, 총 4회로 한다.
- 3. **(사이버출판)** 본 논문집은 학회의 홈페이지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사이버 출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기타) 논문집 발간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정하고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제정 및 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2009년 12월 20일 현재)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과 운영 및 개정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내규는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부적 사항을 나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내규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전원의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3. 본 내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등 내부적으로만 공개한다.

제2조(논문게재) 논문 게재에 관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논문집의 각호에는 동일 저자의 논문을 중복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이사의 동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게재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